

**식품의약품안전청 명령**

불기 2567년(서기 2024년) 제176호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 압수 또는 압류 철회를 위해 식품의약품청 사무총장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불기 2546년(서기 2003년) 왕령에 따라, 의사 결정 권한을 분산시키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신속하고, 적절하게 책임을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정부행정법 불기 2534년(서기 2000년) 및 그 개정안의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와 권한 위임에 관한 불기 2550년(서기 2007년) 왕령 제22조에 따른 권한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다음과 같은 명령을 공고한다.

제1조 화장품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사무총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에 관한 불기 2552년 (서기 2009년) 6월 11일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명령 제247호는 폐지한다.

제2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 법에 따른 관할 구역내의 권한자로 도지사에게 아래와 같이 권한을 위임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공무원이 불기 2558년(서기 2015년) 화장품법에 따라 수입 화장품의 압수를 명령했지만, 압수된 화장품이 수입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아닌 다른 도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에, 압수될 화장품이 보관된 도가 조사하여 수입자가 압수 명령의 원인이 된 결함을 이미 시정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압수를 취소할 권한을 가진다.

압수를 해제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 압수 해제를 명령한 도는 해당 화장품이 수입된 도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2) 도의 담당 공무원이 압수 또는 압류를 명령한 압수 또는 압류를 철회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압수 또는 압류의 원인이 심각하지 않고 국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낮으며, 그 원인이 법에 따라 시정된 경우에만 압수 또는 압류의 철회를 승인할 수 있다.

(3) 권한자가 이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모든 업무와, 추후에 해당 업무에서 수정, 개선, 변경, 추가 또는 기타 조치를 수행하라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자는 조치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3조 권한을 가진 담당자가 주어진 권한에 따라 심사를 수행하고 조치를 한 경우에, 그 이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그 결과가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가진 담당자에게. 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수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4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권한을 가진 담당자는 권한자가 행사한 권한에 대하여 조언, 모니터링 및 평가할 권한이 있다.

제5조 권한을 위임 받은 담당자는 매월 말까지 이 명령에 따른 운영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일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0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 사이의 운영 결과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의 운영 결과는 10월 31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본 명령은 즉시 시행한다.

불기 2567년(서기 2024년) 3월 15일 명령



나롱 아피쿨와니치

식품의약품안전청장